
營林計劃 林地와 綜合土地稅

- 영림계획 입지 종토세 물어야하나 -

올 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이미 부과되어 10월말로 그 납기일이 도과 되었다.

그런데 엄연히 현행법상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영림계획입지가 그러지를 못하고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되어 부과 됨으로써 부당한 엄청난 세액 고지로 말미암아 많은 영림인(營林人)들이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조세저항이라는 표현이전에 극도로 흥분,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세법상에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分離課稅)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지를 못하고 일부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은 종합합산과세로 적용을 받아 산을 팔아도(팔리지도 않지만) 영림계획기간(5년, 앞으로는 10년으로 개정되었다)내의 세액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세금이 고지된 때문이다.

내용인즉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은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바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있는 것이다. 이 「시업중」이란 개념정의를 지방세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청간에 상반된 견해차이로 일부 시·군에서는 혼선을 빚게되고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분리과세 대상임야가 일부에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둔갑함으로써 부당하고 과중한 세액 고지로 말미암아 많은 혼선과 물의가 야기되고 납세자가 감당못할 영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설명하면 영림계획 인가면적이 총100ha가 있다고 가상하자.

이 영림계획이라는 것은 산림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기본계획이고 산림사업이란 산림내에서의 어떤 산림작업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목생장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장기성이기 때문에 조림에서부터 풀베기, 치

수무육, 가지치기, 간벌, 주벌 등 단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 농업에서와 같이 전체 100ha를 매년 한꺼번에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작업량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느해는 작업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고 모든 산림작업이 끝나고 별채수확만을 기다리는 경우는 대기 상태이므로 산림작업이 전연 없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것은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에 속하는 일이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번 과세조치는 당해년도 시업에 따른 면적, 즉 '90년도에 가지치기 10ha만이 계획되었다면 이 10ha만 시업중인 임지로 보고 분리과세대상면적으로 적용을 받았고 나머지 90ha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면적으로 적용 부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볼 때 영림계획을 이해치 못하는 내무부측의 처사도 답답하거니와 하늘 아래 한 정부(政府) 밑에서의 부처간에 용어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당초 시행령 제정 협의과정에서 용어해석상의 혼선을 빚을 소지를 사전배제 하지 못한 산림청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없지 않겠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법의 정신이다.

산림은 공익기능이 크지만 장기적이고 소득이 적은 사업이므로 개인이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림계획 인가지에 대해서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므로 세율이 낮은 분

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배려한 법의 정신이 있음이다.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전체면적에 분리과세가 되도록 보호를 받는것으로 생각하지 당해년도 시업면적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산을 팔아도 영림계획기간내의 세금도 충당 못할 과중한 세액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면적은 해마다 같은 산림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당해년도의 시업대상 면적의 차이로 과세대상 면적도 자연 달라져야 하는 모순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오로지 임업을 모르고 영림계획을 이해치 못한 소치이지만 법의 정신을 살려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조속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혹자는 영림계획을 인가받고도 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않는 임야에 대하여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것은 백번타당한 말이다. 그러한 방치임야에 대해서까지 구제해 달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개정된 산림법에서는 허위로 영림계획을 인가 받았다든지, 시업이 계획보다 80%에 미달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당연히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는등 제재조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방치 임야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는 바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선의의營林人이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일뿐이다.

-편집인-

나무심어 가꾼정성 산불막아 보존하자